

회의자료

2024년 2월 월례회의 자료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목 차

I. 한돈산업 현황 및 활동사항	3
1. 국내 ASF발생 현황 및 대응경과	3
2. 폐사체처리기 공동구매사업 안내	5
3. 축산물 PLS 시행 안내	7
4. 가축분뇨 배출량 산정 및 변경신고 관련 내용	8
5. 가축분뇨이용촉진 사업지침 변경안내	10
6.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안 관련	11
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주요내용	12
8. 지역별 한돈할인판매사업 주요내용	14

I. 한돈산업 현황 및 활동사항

1 국내 ASF 발생 현황 및 대응경과

가. 양돈장 ASF 발생 현황

○ 총 40건 / 24년도 2건 발생(1.16, 1.18), 23년도 10건 발생(1.6~9.25)

- (23년) 포천 5건, 김포 1건, 철원 2건, 화천 1건, 양양 1건

- (24년) 파주 1건, 영덕 1건

년 도	경기					강원										경북	계
	파주	연천	김포	강화	포천	철원	화천	영월	고성	인제	홍천	양구	양양	춘천	영덕		
19	5	2	2	5		-	-	-	-	-	-	-	-	-	-	-	14
20	-	-	-	-		-	2	-	-	-	-	-	-	-	-	-	2
21	-	-	-	-		-	-	1	1	2	1	-	-	-	-	-	5
22	1	-	1	-		1	-	-	-	-	1	1		2	-	-	7
23	-	-	1	-	5	2	1	-	-	-	-	-	1	-	-	-	10
24	1(1.18)	-	-	-	-	-	-	-	-	-	-	-	-	-	-	1(1.16)	2
계	7	2	4	5	5	3	3	1	1	2	2	1	1	2	1	40	

○ 대응경과

1) 역학농장 출하 건의 및 해소 (SOP 개정 반영)

- 도축장 역학(7일), 농장역학(14일), 방역대(21일) 출하

2) 1유형 농가 역학 우선 제외 지원

- SOP에 따라 1유형 농가의 경우 차량 및 사람이 진입하지 않았으므로 역학 사유 미발생

3) 도축장 역학 농가 지정도축장 확대 요청

- 기존 4개 지정 도축장(안동축산물공판장, 소백산 한우, 고령공판장, 민속엘피씨)
→ 3개 지정도축장 추가(구미칠곡축협, 삼세, 경진산업)

4) 농장역학 및 방역대 농가 출하 일령 단축 건의

- 농장역학 : 14일 → 설명절 고려하여 1~2일이라도 단축 요청
- 방역대 : 21일 → 14일로 단축

5) 파주 공동처리장(2개소) 이동제한에 따른 분뇨처리 문제 해소 건의 등

6) 도축장 출하시 생축 운반차량의 경우 거점소독시설 이용 제외

나. 야생멧돼지 ASF 발생현황 및 대응

○ 야생멧돼지 ASF 발생건수 : 3,593건(4개도 29개 시군, 1.29기준)

※ 경기 674, 강원 1,890, 충북 453, 경북 568, 부산 8

⇒ (농식품부 및 환경부에 지속 요구) 야생멧돼지 75% 개체수 저감, 서식밀도 0.7/km² 유지

○ 야생멧돼지 확산 저지를 위한 포획비용 지원 사업

① 남한강 이남(5개 시군) : 양평, 여주, 이천, 음성, 괴산

② 보은·상주 이남(4개 시군) : 옥천, 영동, 무주, 김천

③ 서식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연천·화천 등 접경지역(김포, 파주, 연천, 포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 사업포획단 운영 사업 진행

- 포획단 운영 : 광역울타리 밖 멧돼지 ASF 발생 인근 지역(청송, 김천, 옥천, 영동)

* 환경부, 농식품부 공동, 23년 한돈자조금 지원, 전년말 3,371여 마리 포획

2

축산 폐사체 처리시설 공동구매 사업 안내

가. 사업 개요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한돈농가는 폐기물 관리시설(냉장/냉동 보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함
- 한돈협회에서는 건의를 통하여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밀폐관리가 가능한 시설을 폐기물관리시설로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폐사체처리기도 인정 받을수 있게 되었음
- * 폐기물관리시설(냉장보관시설, 조립식 가건물 보관시설, 폐사체처리시설)

나. 축산 폐기물관리시설(폐사체처리기 포함) 설치 개선 사항

- (한돈협회) 폐사체처리기를 처리시설이 아닌 관리시설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
 - * 처리시설 : 환경부(지자체 환경과) 소관 / 방역시설 : 농식품부(지자체 방역과 소관)
- (농식품부) 한돈협회 의견 수용, 폐사체처리기 등 밀폐관리가 가능한 시설을 폐기물관리시설로 인정기로 하는 추가 대책 발표 (' 23.9.4)

< 개선 대책 주요 내용 >

-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 밀폐관리가 가능한 시설을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
 - (기존) 환경부서 인정 → (변경) 방역부서 인정
 - ※ 지자체 방역부서에서는 농가가 신청할 경우 현장확인 후 밀폐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시설로 인정하도록 함 (기존 폐사체처리기 등도 인정 가능)



조립식 가건물 보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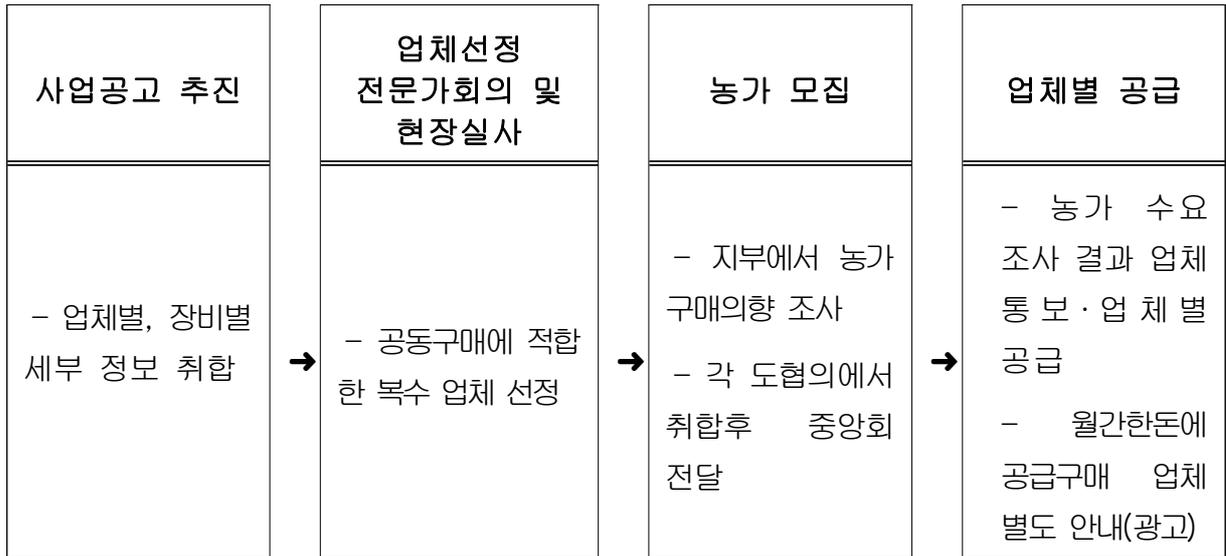
폐사체 관리시설



밀폐형 보관시설

나. 한돈협회 공동구매 사업 안내

- 본회는 본 사업을 통해 한돈농가가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인 품질의 폐사체처리기를 구입할 수 있고, 지속적인 A/S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사업을 실시하며, 농가에 관련 정보를 제공



※ 폐사체처리기 공동구매는 각 지부별 농가 자율 구매임으로 한돈협회는 농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구매에 관한 모든 책임은 농가와 업체 계약 당사자간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공문으로 안내

※ 문의 : (사)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 환경방역팀 070-4616-4259, 02-581-9754

3

축산물 PLS 시행 안내

- 가. 목적 : 미허가 동물약품 등의 오남용을 막고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에 사용되는 동물약품에 우선 시행
- 나. 내용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있는 동물약품은 해당기준에 따라 관리,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약품은 일률기준(0.01mg/kg) 적용
- 다. 농가 준수사항 :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수칙을 지켜주세요!

- 1 사용용량과 사용방법(투약경로)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2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준수합니다.
- 3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를 하는 등 중복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 4 휴약기간 준수를 위해서는 사료통, 축사,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휴약기간 동안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급여합니다.
- 5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유지합니다.

잔류위반 농가 및 부적합 축산물 판정 시 제재사항으로



- ✓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되면 6개월간 집중 관리
- ✓ 엄격한 규제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및 잔류방지 개선 대책 지도
- ✓ 잔류허용기준 초과 축산물은 전량 폐기
- ✓ 동물약품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돈농장은?

- 1 구충제가 첨가된 배합사료를 급여할 경우, 동일 성분의 동물약품이 **중복투여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2 도축출하 전 휴약기간 동안은 **약품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사료만** 급여합니다.
- 3 동물용의약품이 첨가된 사료와 무첨가 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휴약기간 준수

- 1 휴약기간이란?
약품 투여 후 식육, 알, 우유 등에 잔류되는 약물이 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는데 필요한 시간
- 2 준수사항
휴약기간은 약품의 종류, 투여동물, 투여경로(주사, 음수, 사료첨가 등), 투여량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품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휴약기간을 반드시 준수

(예) 제품 사용설명서에 휴약기간이 5일로 되어 있다면, 금요일 오전 9시에 마지막으로 투약했을 경우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 9시가 휴약 1일이 되고,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가 휴약 5일이 됨. 따라서 이 경우 수요일 오전 9시 이후에 출하해야 함.

4 가축분뇨 배출량 산정 및 변경신고 관련 내용

가. 주요내용

-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사유로 가축사육두수 감축을 요구 하는 등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회에서 환경부에 질의회신 받은 내용을 각 지부(회)에서 회원농가에게 적극 홍보가 필요

나. 질의 및 답변사항

양돈분뇨 배출량 산정기준 및 배출시설 변경신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 환경부에서 배출량을 산정할때에 배출면적당 사육두수 산정 기준은 ?
 - 「축산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적정 사육두수 산정
2. 만약 사육두수가 축산법에 따른 사육두수 기준 이라고 하면 농장 가축분뇨 배출량이 사육두수 × 배출원단위 × 30%이내인 경우 배출시설 변경신고가 필요없이 배출이 가능한지?
 -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허가,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하는 경우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됨으로 100분의 30미만의 경우 변경신고대상이 아님

- 회신 원문 붙임첨부

※ 첨부문서(환경부 공문)



환 경 부



수신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회신

귀 협회에서 한돈협지 310-1호('24.01.15)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산정 기준
- 배출시설의 배출량이 3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여부

□ 회신내용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해설서, '23)」는 사육두수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량으로 자원화시설의 용량을 산출한 것이며 배출시설의 면적 당 가축사육두수에 관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가축에 대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은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사육두수를 산정해야 할 것임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 가축분뇨 배출량이 3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환 경 부



주무관	이수영	농업사무관	대갈 2024. 1. 23. 박순규
협조사			
시행	수질수생태과-329	(2024. 1. 23.)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어진동)		/ http://ee.go.kr
전화번호	044-201-7077	팩스번호	044-201-7070 / suj100@ee.go.kr / 대한민국 공개

5

가축분뇨이용촉진(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지침 변경 안내

가. 주요내용

-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 퇴·액비 살포비 지원과 관련하여 전자인계시스템과 AgriX 액비살포 실적이 동일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지원 사업비가 일부 환수되는 등 현장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었음.
- 본회에서는 농식품부 감사관실 및 축산환경자원과에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건의하였고 농식품부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수용하여 가축분뇨이용촉진(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지침 일부를 변경하였음.
- 이에, 가축분뇨이용촉진(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지침 및 주요변경 내용을 사업비 지원을 받는 액비유통센터 등에 안내가 필요함.

나.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내 용
살포의 이용 관련	- 현장점검기준 명확화(수시→분기 1회) - 해외수출 지원요건 명확화(증빙자료 명확화)
액비살포 관련	-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오차 발생에 대한 완화조건 명시 (GPS기록 불일치 예외조항신설, 원거리 살포 등)
퇴비살포 관련	- 교반관리 의무화 권장(현장상황 고려)

가. 현황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 및 시행(2024.3.29.)됨에 따라 관련법률의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24.1.1.~1.31)
- 본회에서는 관련법률의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이전부터 “시행규칙등 제정시, 농촌위해시설의 범위에 축사 불포함” 을 강력히 요구 중(’ 23. ~)

나. 문제점

- 농촌위해시설에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지정하여 축사 이전·철거 가능

* 악취배출시설 : 축산시설, 도축시설, 동물용 사료 제조시설 등

다. 대응현황

- 시행규칙 제정안 관련 법무법인(화우) 법률자문 및 의견 회신(’ 24.1.30)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타축종과 공동대응 및 반대의견 제출(’ 24.1.31)

제정안	수정안	사유
<p>제3조(농촌위해시설) 법 제2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p> <p>2. 「경관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p> <p>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주민이 농촌 경관 및 환경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시설</p>	<p>제3조(농촌위해시설) 법 제2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 시설은 제외한다.</p> <p>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p> <p>2. 「경관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p> <p style="text-align: center;">< 삭제 ></p>	<p>1) 축산업은 농업·농촌에 포함됨</p> <p>-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는 '농업식품기본법'에 의해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인 농촌에서의 생활, 경관 및 환경,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시설인 축사시설 자체를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위입법법의 한계 일탈</p> <p>2) 악취배출시설을 농촌 환경 위해 시설로 볼 수 없음</p> <p>-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음</p> <p>3) 민원이 있다고 위해시설로 볼 수 없음</p> <p>- 주민의 민원제기로 위해시설로 지정할 경우 지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강제 이전·철거 및 수용의 대상이 됨</p>

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주요내용

가. 목적 :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

나.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

다. 시행일 : 2024년 1월 27일부(2021년 1월 26일 제정 3년 유예)

라. 중대산업재해 및 처벌(법 제2조, 제6조, 제7조)

중대재해 기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시 처벌(양벌규정)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경영책임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법인 : 5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경영책임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 1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병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황화수소 급성중독, 랩토스피라증, 단독,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발생시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가능

마. 의무사항 : 안전 및 보건 확보(법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시행령 제4조)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도 동일 의무

바.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규모별(상시근로자수) 선임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 : 안전보건전담조직

*▲가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 중 의사가 없으면 보건전문의 추가 채용

구분	20~49	50~499	500~999	1000~4999	5000 이상
농업	-	■ ▲	■ ▲ ◆	■ ■ ▲ ◆	■ ■ ▲ ▲ ◆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리업	●	■ ▲	■ ▲ ◆	■ ■ ▲ ◆	■ ■ ▲ ▲ ◆

사.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22년 농업에서 635명 업무상사고 재해 발생

- 떨어짐 174명, 넘어짐 128명으로 사고원인 중 절반정도(48%) 차지
-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46명, 사망자 7명으로 사고 발생 중 24% 사고가 재해정도가 심함

□ 2022년 농업 재해 사망사고 사례

재해 일자	재해 지역	재해 개요	예방 대책 예시
02-02	충북 음성	작업자가 혼합기에 부착된 작업발판 끝에서 지게차에 실린 원재료를 투입하던 중 지면으로 떨어짐	•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 조치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03-23	전남 나주	작업자가 탱크로리 차량에 상차 작업 중 후진하는 건설기계에 부딪힘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04-02	충북 음성	화물차에 실린 자재를 차량용 리프트에서 하역하던 중 뒤로 넘어진 작업자가 차량용 리프트에서 떨어진 자재에 맞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고지 후 작업계획서대로 작업 실시
06-20	경기 고양	포대에 담긴 흙을 혼합기에 붓는 도중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기계의 회전체에 끼임	• 회전축에 끼일 위험이 있는 경우, 덮개, 울 등을 설치 후 작업
08-12	충남 예산	작업자가 지붕 철거 작업 중 채광창을 밟고 바닥으로 떨어짐	• 지붕 위에서 작업 시 폭 30cm 이상 발판, 추락방호망 등 설치해야 함
08-21	충남 보령	작업자가 보수를 위해 지붕 위에서 비닐을 덮던 중 떨어짐	• 지붕 위에서 작업 시 폭 30cm 이상 발판, 추락방호망 등 설치해야 함
09-16	충남 청양	작업자가 돈사 분뇨처리용 옥외 PVC배관 보수 중 PVC배관과 연결되어 설치된 피트 외부 상단에 쓰러진 채 발견	• 밀폐공간은 유해가스농도측정, 환기, 감사인 배치,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조치 등을 하고 작업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 양돈농업인의 안전보건관리 등을 협회 홈페이지 지부 알림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목적

- 돈가하락에 따른 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전국 시군단위 대대적인 할인판매를 통해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여 가격 안정에 기여

2. 대상 : 전국 시·군 지부(수요조사 접수한 지부대상)

3. 행사기간 : 2024. 2월 1일(목) ~ 3월 31일(일)까지, 2달간

4. 사업 추진방법

- 한돈판매 농·축협 또는 지역 판매장(한돈 인증 정육점 등) 할인행사 연계 추진
- 판매품목 : 한돈 삼겹살 / 목살 / 전지
- 할인규모 : 판매처 할인액 + 자조금 할인액 = 30%~50% 할인추진
(자조금 할인액) 약 20~25% 범위
 - 판매가(정가)에서 삼겹살 500원/100g, 목살 500원/100g, 전지 300원/100g 할인판매 실시
 - ※ 참여 판매장 판매가(정가)에서 할인판매가격 제안 신청서 첨부
- 준수사항 : 판매가 상한액 준수
(마트할인액 + 자조금지원액 = 30%~50% 할인추진)
- (권장사항) 할인판매와 연계하여 시식회 운영(사업비 중 100만원 이내)
- 플래카드 및 배너(안) - 반드시 부착하여 진행
 - 아래의 플래카드 시안으로 일괄 통일하여 추진(첨부, 해당 시안 파일 지부 알림게시판 참조)

[문구추가] 위기의 한돈농가, 한돈 소비에 답이 있다!



- 일시 및 장소 : ○주최: (사)대한한돈협회 ○지부, ○후원: 한돈자조금